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4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30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2호)
- 구의회 보고 관련 규정 변경(안 제7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2)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2조제2호)
 - 안 제2조제2호 : 「소음·진동규제법」에서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으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(2009. 6. 9) 해당 조문을 변경함
- 구의회 보고 관련 규정 변경(안 제7조)
 - 제7조제1항의 보고 규정과 중복되며, 보고 절차 상 필요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가 타당하다 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O 다만,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기존 조례의 정비는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으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판단됨
- 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- **5. 토론요지**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